

『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을 위해 제정한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」의 근거 법령인 「도시계획법」이 2002. 02. 04. 폐지되었고,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, 존치 이유가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도시계획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」은

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을 위해 제정되었으나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, 근거 법령인 「도시계획법」이 2002. 02. 04 폐지되어,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